

설계자	심사자	사무관	과 장	설계년월일	2022. . .
				심사년월일	2022. . .

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 
재해영향성검토 용역설계서

금 사천오백만원정 (₩45,000,000)

국 토 교 통 부  
철 도 건 설 과

# 1. 설계설명서

1. 과업명 :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

2. 과업의 목적 : 본 과업은 “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” 수립을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의거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고 재해 위험(유발) 요인을 예측·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3. 과업의 수행기간 : 착수일로부터 12개월(360일)

## 4. 과업의 주요내용

가.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)의 규정 및 「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-1호, 2021.1.12.)에 의한 재해영향성 검토

- 기초현황 조사
-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
-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
-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등

나. 기타 우리부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

## 5. 과업의 범위

가. 공간적 범위

- (1) 직접영향권 : 해당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해당 지자체
- (2) 간접영향권 : 한반도 전체 및 노선과 직접 연계되는 지역

나. 시간적 범위 : 연구 기준년도를 2022년도로 하고 최근 10개년 간 발생한 재해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.

## 6. 설계변경 조건

가. 조사구간의 시·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

나.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·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

다.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

라.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

- 1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
- 2)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
- 3)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
- 4)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

## II. 과업지시서

### 1. 일반사항

가.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'자연재해대책법' 등 관련 법령, '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-1호, 2021.1.12.)'과 관련 상위계획, 국토종합건설계획, 도시계획, 행정계획,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,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나.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,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- 1)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
- 2) 군산시 및 김제시 통계자료
- 3)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
- 4) 현지 조사결과

다. 용역 수행자는 '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'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,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, 설계 및 평가 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-Back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라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'자연재해대책법'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마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,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한다.

바.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

자료를 제출하여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.

사.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우리부의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.

## 2. 세부사항

가.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개발에 따른 영향권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한다.

나.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

- 1)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평면적·입체적 특성으로 조사하고, 하천현황을 조사한다.
- 2) 기상에 따른 강우량 자료와 수위관측과 관련된 수문을 조사한다.
- 3) 지형형상을 포함하여 표고 및 경사 분석을 실시하고, 지층·지표지질을 조사·분석한다.
- 4)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자연재해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현황을 조사·분석한다.
- 5) 방재시설 현황 및 방재관련 계획, 현지주민 탐문 및 현지조사에 의해 시행한다.

다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- 1) 홍수유출, 토사유출, 사면안정에 대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해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한다.
- 2)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시행한다.

라. 예상재해 저감대책

- 1)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계획 전·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.
- 2)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전 사전조치 등을 포함한 개발 중 저감대책을 수립하고, 개발 후의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, 사면안정대책, 해안재해대책, 풍수해 저감대책 등을 수립한다.
- 3)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.

마. 유지관리계획 :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중 유지관리계획과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.

바. 종합평가 및 결론 :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제시하고, 이의 이행계획을 수립한다.

### 3. 안전

- 가. 수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, 특히 역구내,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나.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### 4. 보안대책

- 가.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“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”(국토교통부 훈령)에 따라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 하되,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라. “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”에 따라 “을”의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,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.
- 마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바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해 사용될 수 없으며,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,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.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사.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,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함
- 아.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고 원지·폐지 등을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함
- 자. 성과품 외 과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큼 발행하며, 필요가 없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회수 후 파기대책에 따라 파기한다.

- 차. 비밀·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등을 작성 할 수 있다.
- 카.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타.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- 파.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·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.
- 하.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- 거. 기타 “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## 5.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

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부실벌점이 부과된다.

- (1) 고의 또는 사전조사 소홀로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되게 함으로써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
- (2) 본 용역결과로 기본계획 또는 설계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 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된 경우 등

## 6. 기타사항

- 가. 관련기관과는 재해영향 조사시부터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나. 감독자는 추가 과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, 수급자는 본 과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.
- 다. 본 과업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,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, 문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.
- 라.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, 예정공정표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명의로 착수 후 매달마다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며, 필요시에는 우리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
- 마.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,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

수급자 부담으로 소정 기일내에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바.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사.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용역 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서류를 준비 작성하여야 한다.

### 7. 성과품 작성 및 납품

1.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최종보고서는 과업완료 3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(안)을 작성하여 우리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보고서 및 성과품

가. 재해영향성 검토서 : 20부

나. 성과물수록 CD 및 USB : 각 5SET

## III. 예정공정표

구분	표 준 공 정						비 고
	60	120	180	240	300	360	
- 기초현황조사 및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							
- 재해영향성 예측							
- 재해영향평가서 작성							
- 협의기관 협의							
-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							